



제423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의료기관 회계관리 투명성 제고〉

■ 김윤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7882호)

2025. 3.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개정안의 내용	2
2. 검토의견	4
3.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19

I. 개요

1.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 윤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2. 4.

(3) 회 부 일 : 2025. 2. 5.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자로 하여금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의무적으로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외부 회계감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아 회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임.

또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일정 한도 이내에서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되고 있음에도, 해당 준비금이 실제 고유목적 사업에 부합하도록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의료기관 회계기준의 적용을 받는 병원급 의료기관 중 종합병원에 대하여 외부감사를 의무화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과 관련한 세부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의료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2조의2 및 제92조제1항제6호 신설).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1회 이상 받으면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감사보고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동일한 회계법인으로부터 연속하는 4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다음 2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제출받은 서류에 대하여 감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2조의2 및 제92조제1항제6호 신설).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62조의2(회계감사) ① 종합병원 개설자는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은 종합병원 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사보고서 2.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변동내역, 전입내역, 사용내역, 사용계획 등이 포함된 명세서와 그 부속서류 4.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제9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5. (생략) <u><신설></u> ② ~ ④ (생략)	<u>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u>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병원 개설자가 연속하는 4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동일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부터 연속하는 2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감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회계감사 및 감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회계감사 및 감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92조(과태료) ① ----- ----- -----. 1. ~ 5. (현행과 같음) 6. 제6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② ~ ④ (현행과 같음)
시행일: 2026년 1월 1일	

2. 검토의견

- 현행법령은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준수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¹⁾
- 현행 「의료법」과 보건복지부령인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받을 의무는 부여하고 있지 않으며, 「의료기관 회계기준 운영 업무 위탁 내용 등 고시」에 따라 의료기관 회계기준 운영 업무를 위탁받고 있는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의료기관이 제출한 회계자료를 수집·검토·분석하고 있음.²⁾
- 이에 개정안은 의료기관 회계기준의 적용을 받는 병원급 의료기관 중 종합병원에 대하여 외부감사를 의무화하고, 감사보고서 및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사용과 관련한 세부내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며,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이에 대한 감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의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1) 「의료법」 제62조(의료기관 회계기준) ①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기관 회계를 투명하게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자는 회계를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지켜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회계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제2조(의료기관 회계기준의 준수대상) ① 「의료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개설자를 말한다.

1. 2022년 회계연도: 300병상(종합병원의 경우에는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2. 2023년 회계연도: 200병상(종합병원의 경우에는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3. 2024년 회계연도 이후: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②제1항에 따른 병상 수는 해당 병원의 직전 회계연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의료기관 회계기준 운영 업무 위탁 내용 등 고시」

1. 의료기관 회계기준 운영 업무 수탁자

가. 기관명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 의료기관 회계기준 운영 업무 위탁 내용

나.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제11조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제출하는 회계자료의 수집·검토·분석 및 공시 등

- 참고로, 주권상장법인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영리법인의 경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³⁾에서 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있음.

□ 특히, 개정안은 회계감사를 받은 종합병원 개설자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 각 종합병원이 해당 준비금을 실제 고유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란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준비금으로, 「법인세법」에서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결산을 확정할 때 고유목적사업이나 일반기부금⁴⁾에

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감사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이하 “회계법인”이라 한다)

나.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국공인회계사회”라 한다)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한 감사반(이하 “감사반”이라 한다)

제4조(외부감사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의 감사인은 동일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주권상장법인

2.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3. 그 밖에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수 또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다만, 해당 회사가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본문의 요건 외에 사원 수, 유한회사로 조직변경 후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유한회사에 한정한다.

제11조(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등)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가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거나 변경선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주권상장법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은 제외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사 가운데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고 대주주 및 그 대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대주주 또는 그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인 회사

제26조(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제23조제1항에 따라 감사인이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4)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③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일반기부금: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24조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지출하기 위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비(損費)로 계상하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일정한 범위 내에서 손금(損金)에 산입하고 있음.⁵⁾

즉,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만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감액되며(소득금액의 50~100% 한도), 이에 따라 과세표준이 줄어들면서 세금이 감면되는 효과가 있음.⁶⁾

2. 손금산입한도액: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공익법인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바목에 따라 지정·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한정한다.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라.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및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의료기술협력단 [법 제24조제2항제1호마목14)에 해당하는 의료기술협력단은 제외한다]

- 5) 「법인세법」 제29조(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호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그 결손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1.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한다)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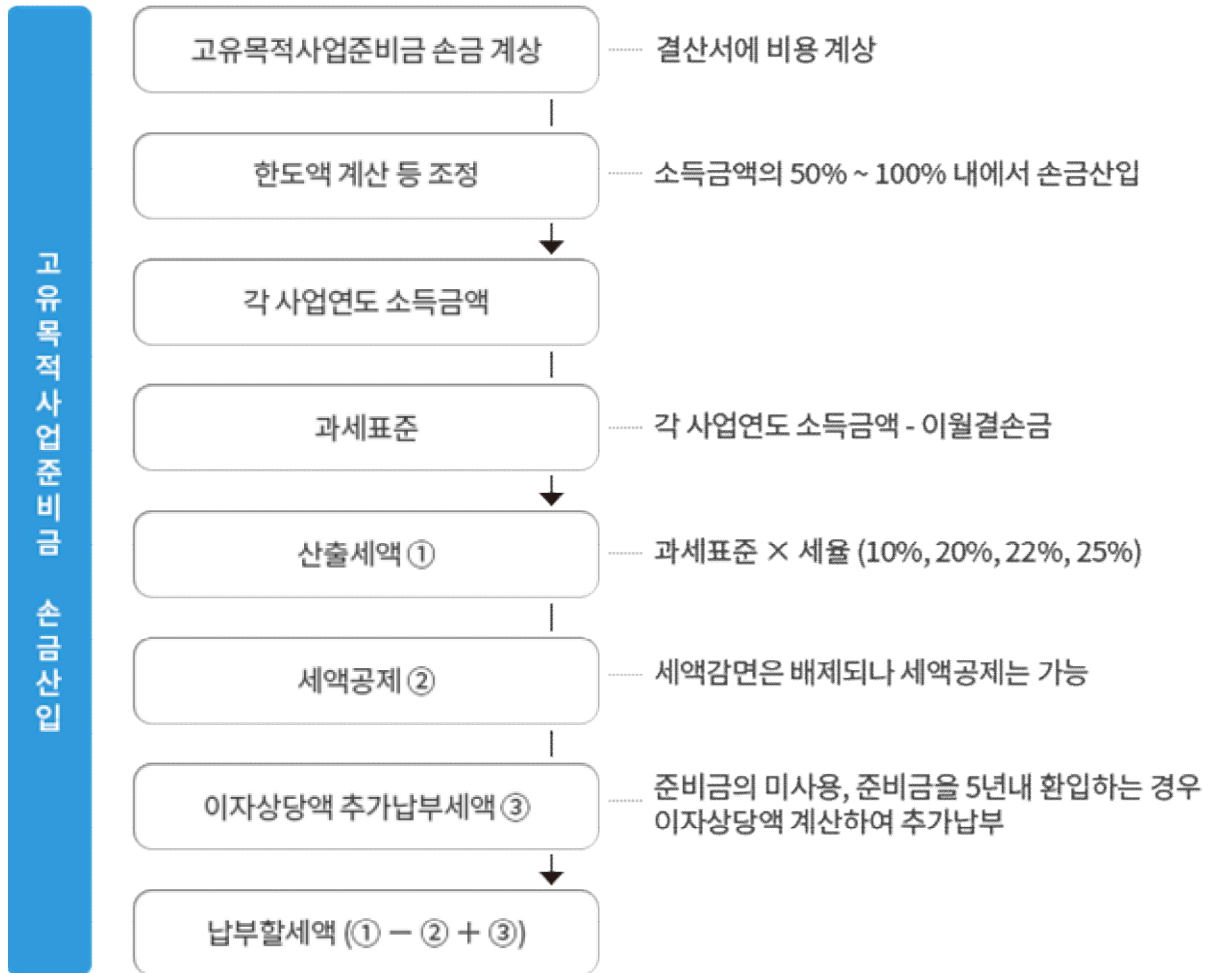
나.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또는 제48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이나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2. 그 밖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6) 단, 추후 감가상각비 상계 등의 방식을 통해 익금(益金) 산입하여 미래 과세표준을 늘려 세금을 이연시키는 방식임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에 따른 세액산출 흐름도 >



그런데 2024년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각 병원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통해 상당 수준의 적립금을 보유하면서도 대부분을 토지, 건물 및 장비 구입에 사용한 것을 지적하면서, 이를 필수 의료인력 충원 또는 전공의 처우개선에 우선 사용토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⁷⁾

7) 2024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24.10.8.) 中 (김윤의원) “우리나라의 대학병원·상급종합병원 45개의 지난 3년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적립액이 연평균 1조 원이 넘고요. 병원당은 233억, 이익률은 6.3%에 달합니다. 누적으로 따지면 5조 원의 적립금이 현재 쌓여 있고 병원당 1000억 평균의 적립금이 쌓여 있습니다. (중략) 건강보험이 돈을 적게 주고 있는 것도 맞지만 사실은 병원이 의료인력들에게 제대로 월급을 안 주고 보상을 안 하고 있는 게 저는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최근 3년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 현황 >

(단위 : 억원)

회계연도	개소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합계)
2021	286	20,184
2022	289	18,584
2023	297	10,323

주: 종합병원(개인병원 제외)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의 당기순이익 왜곡 방지를 위해 지난 2015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전·후를 구분 표기하도록 ‘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보건복지부 고시)⁸⁾을 개선한 바 있으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세부내역을 파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외부회계감사를 받은 종합병원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변동내역, 전입내역, 사용내역, 사용계획 등이 포함된 명세서 등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며, 각 병원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실제 고유목적 사업에 부합하도록 사용하는지 보건복지부가 파악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2024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24.10.23.) 中

(김윤의원) “병원들이 돈을 얼마나 벌어서 어디다 썼는지 조사를 해 왔습니다. 그랬더니 17년부터 22년까지 6년간 7조 원의 흑자를 냈고요. 그 7조 원 흑자 낸 것 중에 90%를 소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라고 하는 형태로 저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유목적사업 누적액에서 5.5조를 가져다가 남은 흑자하고 합쳐서 5.7조를 이 6년 동안 썼는데 돈을 어디다 썼는지 봤더니 땅 사고 건물 짓고 장비 사는 데 썼습니다. 21년에서 22년 사이에 상급종합병원에서 늘어난 의사 수가 54명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1조를 넘게 버는데 54명만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제도를 개선해서 필수의료인력 충원을 먼저 하고 나머지 장비 사고 땅 사고 분원 짓고 하는 데 쓰도록 제도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지아의원)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1조 4000억 넘는 건강보험 급여비 선지급이 됐는데 지금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되면서 비상진료체계가 지속돼서 선지급 상황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선지급 추가 지원 및 상환 유예,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활용을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시겠지만 법인세 시행령 개정이 필요합니다.”

(백혜련의원) “이런 분원 설립에 고유목적금을 쓸 게 아니라 전공의 복귀를 위한 급여 인상과 처우개선 등에 고유목적금을 쓰는 것이 맞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8) ‘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보건복지부고시) 中 “가. 손익계산서 작성기준 4) 손익계산서는 의료이익(의료손실), 법인세차감전순이익(순손실), 법인세비용, 고유목적사업준비금설정전 당기순이익(손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 및 당기순이익(순손실)으로 구분 표시하여야 한다.”

- 참고로 보건복지부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변동내역, 사용내역 전입내역 등 세부 내용을 재무제표 부속 명세서에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하는 등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의료기관의 경우 설립 주체에 따라 개별 법률에서 별도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외부회계감사 의무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관련 법령과의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일부 종합병원은 현제도 각 근거법률의 규정에 따라 외부회계감사를 받고 있는데, 적용받는 법률에 따라 관리감독 부처, 회계기준 등이 차이가 있음.

< 의료기관 설립 주체별 외부 회계감사 근거 규정 현황 >

외부 회계감사 근거 법률	적용대상 의료기관	주요 내용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⁹⁾	국립대학 병원 (서울대병원 제외)	- 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 - 결산서 첨부서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 - 회계기준/회계규칙 관련 조항, 외부감사인 지정 조항, 감리 관련 규정, 외부 회계감사 미수감시 과태료 규정 등은 없음
「암관리법」 ¹⁰⁾ 「국립중앙의료 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 암센터, 국립중앙 의료원	- 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 결산서 첨부서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감사의 감사보고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 기타 - 보건복지부장관의 지도·감독 - 회계기준/회계규칙 관련 조항, 외부감사인 지정 조항, 감리 관련 규정, 외부 회계감사 미수감시 과태료 규정 등은 없음

외부 회계감사 근거 법률	적용대상 의료기관	주요 내용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¹¹⁾	지방 의료원	- 결산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 결산서 첨부서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도·감독 - 「의료법」 제62조에 따른 의료기관 회계기준 준수 - 외부감사인 지정 조항, 감리 관련 규정, 외부 회계감사 미수감시 과태료 규정 등은 없음
「사립학교법」 12)	학교법인 병원	-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경우 결산서에 대한 직접 선임한 학교법인과 독립한 외부감사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감사인)의 회계감사 -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 - 결산서 첨부서류: 학교법인의 감사 모두가 서명·날인한 감사보고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및 부속서류 - 교육부장관과 관할청의 지도·감독 - 학교법인의 회계규칙은 교육부장관이 정함 - 외부감사인 지정 조항 있음(4년 연속 학교법인이 직접 선임, 이후 2년은 교육부장관이 외부감사인 지정) -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외부감사보고서 및 부속서류를 감리 -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사회복지사업 법」 ¹³⁾	사회복지 법인병원	-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에 대한 지방의회의 추천을 받은 공인회계사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감사인의 회계감사(회계부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 가능) -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도·감독 - 회계감사 거부·방해·기피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그 외 회계감사 관련 규정 없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¹⁴⁾	공익법인 병원	-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감사인의 회계감사 -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공익법인 회계기준 적용¹⁵⁾ - 외부감사인 지정 조항 있음(4년 연속 공익법인이 직접 선임, 이후 2년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외부감사인 지정) - 기획재정부장관은 감사보고서 및 재무제표 감리 가능 - 외부 회계감사 미수감시 과태료 규정 없음 - 전용계좌 개설 의무 - 결산서류 등 공시 의무
없음	그 외 병원	-

9)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22조(결산서의 제출 등) ① 원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2. 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3.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23조(감독) 교육부장관은 대학병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업무·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0) 「암관리법」

제41조(결산서의 제출) 국립암센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지도·감독)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립암센터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업무·회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1)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회계기준) 원장은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62조에 따른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0조(결산서의 제출 등) ①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입·세출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2.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3.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12) 「사립학교법」 제31조(예산 및 결산의 제출) ④ 학교법인은 제1항에 따라 결산서를 제출할 때에 그 학교법인의 감사 모두가 서명·날인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제5항에 따른 학교법인은 제외한다)은 직접 선임한 학교법인과 독립한 외부감사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감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감사보고서(이하 “외부감사보고서”라 한다) 및 부속서류(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교의 교비회계 결산은 제외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선정한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은 제1항에 따라 결산서를 제출할 때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보고서 및 부속서류(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교의 교비회계 결산은 제외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연속하는 4개 회계연도: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 직접 선임한 학교법인과 독립한 외부감사인
2. 제1호에 따른 회계연도 다음 연속하는 2개 회계연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외부감사인. 이 경우 동일한 외부감사인으로 지정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학교법인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회계연도의 외부감사인을 해당 회계연도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회계연도의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제31조의2(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①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외부감사보고서 및 부속서류를 감리(監理)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회계감사 및 감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3)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지도·감독 등)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추천을 받아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공인회계사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을 선임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의 추천, 회계감사의 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 ③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산 규모 및 수입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공익법인등
2.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의료법」에서 일반적인 회계감사 규정을 신설하는 경우, 개별법 상 회계감사 관련 규정과의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 연속하는 4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부터 연속하는 2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감사인 지정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세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을 의무가 있는 공익법인등이 공시한 감사보고서와 그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감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감사 및 감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0조의4(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① 공익법인등(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은 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의무 및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단서 생략)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공익법인 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제1항제5호에 따른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다.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라.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및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의료기술협력단[법 제24조제2항제1호마목14)에 해당하는 의료기술협력단은 제외한다]

마.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바.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비영리의국법인,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주사무소 및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이 경우 국세청장은 해당 법인의 신청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해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이하 이 조에서 “공익단체”라 한다) (이하 생략)

15)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6제2항에 따라 의료법인과 학교법인은 회계감사의무 등을 이행할 때 각 개별법(「의료법」, 「사립학교법」)에 따른 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회계기준 적용은 제외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6(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② 법 제50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또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익법인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 참고로, 현행법상 의료기관 회계규칙 준수 의무가 부여된 종합 병원 중 개별법상 근거에 따라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의료기관을 제외하면, 개정안에 따라 회계감사 강화 의무가 부여되는 의료기관은 총 78개 의료기관¹⁶⁾으로 파악됨.

□ 한편, 위 78개 의료기관 중 국군수도병원(군병원)과 경찰병원(국립)은 국가기관으로서 정부 예산을 집행하므로, 외부회계감사의 예외로 둘 필요가 있음.

- 국군수도병원은 「국군의무사령부령」 17)에 따라 국군의무사령부 소속으로 설치된 군 조직으로,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해당 법령에 따라 관리되고 있음¹⁸⁾
- 경찰병원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경찰청장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되었음. 19)

16) 개인, 군병원, 경찰병원 등 78개 의료기관.

17) 「국군의무사령부령」 제6조(직할기관의 설치) ② 국군의무사령부 소속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는 병원 및 의학연구소,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둘 수 있다. (각 호 생략)

18)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① 국방부장관은 국군의 부대 및 기관의 주된 업무가 사업적·집행적 성질의 국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성과 측정기준의 개발과 성과측정이 가능한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와 제13조에 따른 군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법률 또는 대통령령으로 설치되는 부대 및 기관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한다.

제27조(회계운영의 원칙) 군 책임운영기관은 일반회계로 운영하되, 일반회계에 별도의 군 책임운영기관 항목을 두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의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에 준하는 예산운영상의 자율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8조(예산안편성지침)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군 책임운영기관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방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9조(예산의 전용) ① 기관장은 「국가재정법」 제46조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출예산의 각각의 총액 범위에서 각 과목 상호 간에 전용할 수 있다.

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전용한 경우에는 과목별 금액과 이유를 명시한 명세서를 국방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30조(예산의 이월) ①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 중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정적 성격의 경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48조제4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 종합병원 설립구분별 현황('23.12월말 기준) >

구분	개인	공립				국립	군병원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재단법인	특수법인	학교법인	총계
		시도립	시군구립	지방의료원	기타								
개소수	76	2	1	31	29	2	1	2	137	22	8	66	377

자료 : 보건복지부

□ 둘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범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으며,²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 19)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소속기관) ② 경찰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경찰청장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경찰병원을 둔다.
- 20) 「법인세법」 제29조(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⑩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의 범위 및 승계,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⑥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이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취득 후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이나 보건업[보건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의료법인”이라 한다)에 한정한다]에 3년 이상 자산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처분하는 경우에는 제1호 또는 제3호의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취득비용(제31조 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을 포함한다) 및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해당 법인에 설치되어 운영되는 기금 중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으로서 건강보험·연금관리·공제사업 및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법령에 의하여 기금 또는 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
- 의료법인이 지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 의료기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의료 해외진출을 위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지출하는 금액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회원에게 무상으로 대여하는 금액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동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동법에 의한 예금자보호준비금에 출연하는 금액
-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중앙회가 동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6조에 따라 설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가 같은 법 제170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라목·마목(관련 토지의 취득·비축을 포함한다) 및 같은 항 제3호의 업무에 지출하는 금액

손금에 산입한 후 5년동안 고유목적사업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고유목적사업등이 아닌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인세법」 제29조 제5항²¹⁾에 따라 해당 금액을 다시 익금(益金)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의료법인은 손비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상당액을 의료발전회계로 구분하여 정리하여야 함.²²⁾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범위 >

1.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유형자산 및 유형자산 취득비용(자본적지출 포함) 및 인건비 등 필요경비
2. 기금 또는 준비금에의 적립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건강보험·연금관리·공제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에 한함)
3. 의료법인이 의료기기 등 자산의 취득 또는 연구개발사업에 지출하는 금액 ('17.2.3. 이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i) 병원 건물 및 부속토지
 - ii)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 iii)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정보의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설비
 - iv) 산부인과 병원·의원 또는 조산원 운영 의료법인이 취득하는 산후조리원 건물 및 부속토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의료기기 등의 범위) ① 영 제56조제6항제3호가목에서 “의료기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병원 건물 및 부속토지
2.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3.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정보의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설비
4. 산부인과 병원·의원 또는 조산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 취득하는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 건물 및 부속토지

② 영 제56조제6항제3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해외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병원 건물 및 부속토지를 임차하거나 인테리어 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기기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 설비를 임차하는 경우

③ 영 제56조제6항제3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사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가목에 따른 자체연구개발사업과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 21) 「법인세법」 제29조(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⑤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잔액(제5호의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등이 아닌 용도에 사용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1. 해산한 경우(제4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승계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고유목적사업을 전부 폐지한 경우
3.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국제기본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되거나 거주자로 변경된 경우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5년 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으로 한정한다)
5.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등이 아닌 용도에 사용한 경우

- 22)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⑩ 제6항제3호를 적용받으려는 의료법인은 손비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상당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의료발전회계로 구분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4. 조특법 제74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학교법인, 산학협력단,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및 발전기금)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금액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
5. 농업협동중앙회가 회원에게 무상 대여하는 금액
6.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7.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관련법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

이처럼 의료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부합하도록 사용하고 있는지는 법인세법령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개정안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내역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국세청과 더불어 의료법인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추가로 각 병원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실태를 확인한다는 의미는 있으나, 일단 그 사용내역이 법인세법령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범위’에 해당하기만 하면, 각 항목들 중 어느 항목의 비중이 높은지까지는 강제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보임.

□ 특히 의료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의료업을 수행하기 위한 인건비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일각에서 제기하는 바와 같이 전공의 급여 인상과 처우개선을 위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하기는 어려움.

-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범위에 포함되어 있음. 그러나 이때 고유목적사업이란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

목적은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하는데, ‘의료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고유목적사업에서 제외되어 있음.²³⁾

- 23)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 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⑤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은 해당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에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외의 사업으로 한다.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1. 축산업(축산 관련 서비스업을 포함한다) 외의 농업
2. 연구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 2의2. 선급검사(船級檢査)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시설에서 해당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에 따라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업
 -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 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정관 등에 따라 잉여금을 국외 본교로 송금할 수 있거나 실제로 송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국제학교
 - 마.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
 -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사회복지관, 부랑인·노숙인 시설 및 결핵·한센인 시설
 -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앙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
 - 다.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라.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한다)
 - 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 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가 운영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 사.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아.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 자.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 제15조제2항에 따른 자활지원센터 및 제17조제2항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
 - 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 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타. 「입양특례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입양기관
 - 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제7조제2항에 따른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 하.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거.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5. 연금업 및 공제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가.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사업

- 다만, 해당 재원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하기 이전에 인건비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임.

-
- 나. 특별법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영위하는 사업(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한한다)
 - 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운용하는 사업
 - 6. 사회보장보험업종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사업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 7.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가 공급하는 용역중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 8. 금융 및 보험 관련서비스업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이와 관련된 자금지원·채무정리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 나.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 다.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 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을 통한 부실자산 등의 인수 및 정리와 관련한 사업
 - 마.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 바. 「산림조합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 9. 「혈액관리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혈액원 개설 허가를 받은 자가 행하는 혈액사업
 - 10.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을 통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제도를 운영하는 사업(보증사업과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에 한한다)
 -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차상위계층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창업비 등의 용도로 대출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
 - 12. 비영리법인(사립학교의 신축·증축, 시설확충,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한한다)이 외국인학교의 운영자에게 학교시설을 제공하는 사업
 - 13.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 및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기원의 승단·승급·승품 심사사업
 - 1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행하는 폐기물처리와 관련한 사업
 - 15.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이 같은 법 제24조의2에 따른 학자금대출계정을 통하여 운영하는 학자금 대출사업
 - 16.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3.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1) 보건복지부(보완)

- 현행 의료법 및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상 의료기관에 대한 별도의 회계감사 의무는 없으며, 관련 고시에 따라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재무제표 및 부속 명세서를 검토하고 있으나 외부 회계감사에 비해 신뢰성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종합병원에 대한 외부감사 및 사후 감리를 의무화하고자 하는 개정안 입법 취지에 공감함.
-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해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의료기관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면제규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법인 단위의 회계 감사를 받는 경우, 그 법인 산하의 개별 병원에 대한 재무제표를 법인의 감사보고서에 주석 등으로 포함하도록 개별 조문 추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대한병원협회(반대)

- ‘비영리법인이 개설·운영하는 병원’은 병원별 해당 설립 근거에 따른 소관 법령 등을 통해 규모를 고려하여 외부감사 등이 이루어지고 있어 개정 불필요하며, 설립 주체에 대한 고려없이 개인 종합병원 까지 외부감사 및 감리, 주기적인 감사인 지정제도 시행을 확대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임.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각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으로 ‘사용범위가 명확히 제한’되어 있으며,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거나 미사용 시 가산세가 부과되도록 하고 있어 이미 국세청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고 있음.

3) 대한의사협회(반대)

- 현행 학교법인 또는 공익법인 등은 개별 법률에서 별도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외부감사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대학 병원급 의료기관의 대부분은 이미 외부 회계감사를 도입하여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음.
- 민간 자본으로 설립된 종합병원은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준수하여 국가에 회계자료를 제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외부회계 감사제도를 의무화하여 국가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민간시설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임.
- 의료재단의 경우, 비영리 의료법인으로서 의료법 제48조(설립허가 등)에서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기존 법령으로도 투명한 회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4) 대한간호조무사협회(찬성)

-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의무 규정이 없어 투명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외부감사를 통해 의료기관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본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함.

5) 한국환자단체연합회(찬성)

- ☐ 의료기관의 외부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세부내용을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의료기관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어 찬성함.

문 의 처
02)6788-5494